

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4. 7. 23.>

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(제25조의4제1항 관련)

대상자	판단 시 고려사항
부모 등 해당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	-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(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,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-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-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어선원등에 대해 범죄행위,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